

보 고 사 항

□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

1. 제9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2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
3.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
4. 기타 일반안건

□ 제9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

- 제9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— 2001. 11. 26
(화순군의회 공고 제2001 - 9호)

<공고내용>

- 집회일시 : 2001. 11. 29 (목) 10:00
- 집회장소 : 화순군의회 본회의장

□ 각종 의안 발의상황 보고

○ 제9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
- 발의일자 : 2001. 11.
- 발의자 :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등 5인
- 회기 : 2001. 11. 29 ~ 12. 1 (3일간)
- 의사일정 : 별첨

○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- 발의일자 : 2001. 11.
- 발의자 :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3
- 출석요구사항 : 별첨

□ 각종 의안 제출상황 보고

○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건

- 발의일자 : 2001. 11. 26
- 발의자 : 조영길의원외 5명

- 제안이유

- 화순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공로가 지대한 외국인, 재외동포, 타시군 출신인사 등에게 화순군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
- 명예군민증을 수여대상과 수여 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함.

- 주요골자

- 명예군민증은 화순군 및 군민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의 이미지 선양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한다.
(안 제2조)
-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20세이상 군민 30명이상 또는 각급기관단체장의 추천에 의거 화순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(안 제3조)
- 명예군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여대장을 미치하고 공로조서 및 관계서류는 영구보존 관리한다.(안 제4조)
-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부여와 의무 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.(안 제 5조)
-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화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.(안 제6조)

※2001. 11. 27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건

- 발의일자 : 2001. 11. 27
- 발의자 : 화순군수
- 제안이유

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모자건강을 증진하고,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코자 함.

- 주요골자

조례중 “60일”의 출산휴가를 “90일”의 출산휴가로 한다.

- 관련법령 및 근거

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(표준안)

※2001. 11. 27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건

- 발의일자 : 2001. 11. 27
- 발의자 : 화순군수
- 제안이유

- 6조2항중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중 특정의 비방 등 불건전한 내용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삭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칠 경우 전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 삭제토록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- 조례중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실과 명칭을 “기획예산실”에서 “총무과”로 “기획예산실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변경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 설치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 준하여 설치토록 개정코자 함.

- 주요골자

- “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삭제할 수 있다”를 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삭제할 수 있다”로 삭제(안 제6조 2항)
- 홈페이지 게시판 내용을 삭제한 경우 “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”를 신설(안 제6조 2항)
- 사이버 민원실 설치 근거법령을 사이버민원실을 정의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준한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(안 제8조 1항)

- 관련법령 및 근거

-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(표준안)
정통12410-889(2000. 7. 31)

※2001. 11. 27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건

- 발의일자 : 2001. 11. 27
- 발의자 : 화순군수

- 제안이유

- 유행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“주민자치과”를 신설하고
-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실과소간 불합리한 사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.

- 주요골자

- 과 신설 : 주민자치과
- 담당조정 및 업무이관
- 주택건축담당 : 종합민원과 → 도시경제과
- 병 무 단 당 : 종합민원과 → 주민자치과
- 교통행정담당 : 도시경제과 → 건 설 과
- 실과소간 불합리한 업무조정
 - .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
 - . 문화관광과 → 총 무 과
 - . 지하수개발이용등에 관한 사항
 - . 건 설 과 → 환 경 과
 - .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
(주택개량 및 빙집정비사업 제외)
 - . 종합민원과 → 환 경 과
 - . 소도읍 가꾸기 사업
 - . 건 설 과 → 도시경제과
- “주민자치과”에 다음사무를 분장
 - . 읍면 기능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
 - .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.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 - . 병무행정 및 공익근무에 관한 사항

- 관련근거

-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한시기구 · 정원 승인
(행정자치부 자치 13101-1257 2001. 7. 6)

※2001. 11.27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춘양,이양,능주,동복,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
의견제시의 건

- 발의일자 : 2001. 11. 19

- 발의자 : 화순군수

- 주요골자

· 춘양,이양,능주,동복,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 (안 별첨)

- 관련법령 및 근거

·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함.

※2001. 11.20 산업·건설위원회 심사회부